



법조인 동정

##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

“기존의 행정법  
패러다임 바꾸는 게  
가장 중요”



“헌법·행정법·국제공법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김철용(사진)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과 국제공법의 중요한 부분이 인권이고, 행정법은 자연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20편 이상의 전문 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의 연구 활동으로 국내 공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환경법학회 회장·한국행정관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4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 논문·서적 등 220편  
각종 행정법률 제·개정 참여, 공법 발전에 큰 기여**

“대학원에 입학하고 헌법이 바뀌어도 행정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법을 전공하기로 하고, 헌법이 변하면 행정법도 변한다는 가설을 세워 석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행정법을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파고들며 60여 년간 행정법을 연구해왔다. 특히 그는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 문서열람, 이유제시, 처분기준의 설정공포에 있어서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행정법에 대한 종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개인적 권리, 즉 개인적 공권이 발생한다는 해석에서 헌법에 의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공법학의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한국공법학의 연구입니다. 특히 일반행정법, 헌법, 국제법의 함의라는 3자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일반 법제도와 공법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협동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처/법률신문)